

IV. 환경 단신

1. 교토의정서 조인국, 탄소 흡수원에 대해 논의함

- 폴란드에서 UN 교토의정서 조인국들 회의
 - 12월,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제 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탄소 흡수원에 대한 규정을 확정하기 위한 사전 회의임
 -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정부간 패널의 최근 보고서를 보완한 내용을 논의함
 - 여기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계획된 프로젝트들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술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이 지적됨
 - 이에 따라 EU 환경부 장관회의에서는, 흡수원 적용에 대한 규모와 위험성을 정 확히 판단할 수 없다면 교토의정서의 첫 실행기간의 종료 연도인 2012년까지 탄소 흡수원에 관한 계획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였고,
 - 탄소 흡수원을 청정개발메카니즘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함
- 산림과 토지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 정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음
 - 주요 논의점은 교토의정서 3.3 조항으로서
 - 조림, 벌목 그리고 재식림,
 -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인간의 활동,
 - 부지의 이용 및 변경 그리고 조림 활동 등이 논의됨
 - 특히 LULUCF(Land Use, Land Use Change and Forestry)에 의해 흡수되는 탄 소의 양을 측정하는 문제와 함께 자연적으로 흡수되는 탄소의 양과 인간의 노력에 의해 흡수되는 탄소의 양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합의안은 도출되지 않았음

(현대환경연구소, Eco-Brief, 2000년 7월 21일)

2. EU, 오염물질배출 등록제 시행 확정

- 지난 20일, EU 집행위원회는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주요 산 업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등록제(EPER)를 실시할 예정임을 공표함

- 오염예방 및 제어에 관한 1996년 EU 지침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으며, 미국의 유해 물배출목록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임
- EU 각 국 대표자 회의는 3년 동안 이 문제를 철저히 토의·검토하였으며, 결국 최종안을 놓고 투표를 실시하여 통과시킴

○ 2003년에 첫 번째 EPER이 발표될 것임

- EU 역내의 약 20,000개 산업시설에서 대기와 하천으로 배출되는 50가지 주요 오염물질의 2001년 자료를 대상으로 함
 - 주요 대기오염물질과 교토의정서에 의해 규정된 6개의 온실가스도 포함되며 중금속, 염화유기물, 유기·무기 화합물들이 포함됨
 - 각각의 지정물질은 일정 기준(농도 및 배출량)을 넘을 경우에만 등록 대상이 됨
- 두 번째 EPER은 2004년 자료를 2006년에, 세 번째 EPER은 2007년 자료를 2008년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해마다 전년도 자료를 발표할 예정임

○ 현 EU 회원국들 사이에 조금씩 다른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 기준이 앞으로 단일화되는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됨

- 오염물질 배출 정보를 공표함으로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각 산업시설간, 분야별 그리고 국가간 오염물질의 배출정보를 비교해 볼 수 있게 되고
- 시간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 그리고 기업의 환경오염 예방의지를 나타내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임

(현대환경연구소, Eco-Brief, 2000년 7월 25일)

3. WTO, 석면 수입 금지 지지

- WTO는 캐나다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모든 석면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조치를 지지할 것이라고 함
 - 이는 프랑스가 1996년에 제정한 석면 수입 금지 법규가 국제무역 관행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WTO가 그 정당성을 부여한 것임
 - 따라서 프랑스는 캐나다에 어떠한 형태의 보상도 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함
 - 주의해서 취급할 경우에 濕석면(chrysotile)이나 白석면은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캐나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

- 네 명의 WTO 전권중재인들은 프랑스의 규정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수입을 제한한 것이 아니므로 WTO에서 금지하고 있는 '무역에 관한 기술장벽'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것임
 - 이들은 전문가들에게 온 석면의 유해성과 위해성평가 방법, 제한적인 이용의 가능성, 대체물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자문을 구한 뒤 결정함
- 유럽집행위원회에서도 2005년부터 溫석면의 완전 금지를 포함해 어떠한 형태의 석면도 EU 내에서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하였음
 - 유럽집행위원회는 인간이 석면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을 때까지 안전한 지 여부와 석면이 발암성을 나타내지 않는 수준 등에 대한 과학적인 결과가 아직까지 도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함
 - 그러나 EU 회원국인 스페인, 포르투갈, 그리스, 아일랜드, 룩셈부르그 등은 여전히 溫 석면의 사용과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
- 향후 캐나다 정부가 항소하더라도 지금까지의 관례상 판정이 번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임
 - 캐나다 정부는 퀘벡주의 溫석면 광산과 연관된 2,500개의 일자리를 지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소할 것으로 예상됨
 - 캐나다는 온석면의 주요 수출국으로서 1998년에는 약 2억1천2백만 유로 상당하는 32만 톤을 생산해 전세계의 18.2%를 점유하여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양을 생산하였음
- WTO의 이번 판정은 환경 문제로 무역 상에 불이익을 부여한 최초의 조치로서 향후 환경 이슈를 무역의 장벽으로 도입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됨
 -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 나라는 유해물 금지에 관한 각국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수출 물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자료를 철저히 갖추는 등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됨
 - 제품 제조 단계에서부터 환경성을 고려하는 DfE (Design for Environment; 환경친화설계) 개념을 빠른 시간 내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

(현대환경연구소, Eco-Brief, 2000년 8월 1일)

4. 영국, 배출권거래제 유인책 마련

- 영국 정부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이산화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임을 발표함
 - 배출권거래를 위한 예비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영국 배출권거래그룹은 거래 시작 2년 후인 2003년에 기금을 분배한다는 정부의 정책을 환영함
 - 고용불안과 산업 경쟁력의 약화 없이 지구환경을 보호하도록 오염물의 배출량을 비용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도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이지만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한 재정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함
 - 영국 정부는,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많이 감축한 기업에 우선적으로 정부가 조성한 펀드를 부여할 계획임
 - 이번에 도입될 활성화제도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이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 에너지稅 징수액의 80%를 되돌려주는 제도와 맥락을 같이함
- EU 회원국 중 덴마크와 영국이 예비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음
 - 지난 해에 제안된 예비 배출권거래제에는 현재 1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, 최근 영국정부는 이와 관련된 예산을 모두 승인하였음
 - 특히 영국은 장차 설립될 탄소거래소를 런던에 유치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배출권거래제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것이 유치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 - 또한 2005년부터 EU 차원에서의 배출권거래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이의 결과가 EU 시행안에 반영될 것을 기대함
 - 결국 自國에 유리하게 배출권거래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기본 전략이 배경이 됨
 - 이에 따라 독일과 노르웨이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함
- 영국의 배출권거래 기금 적립은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도를 이행하는데 자극 제가 될 것임
 -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우리 나라도 관련 사업의 진행 추이에 관심을 갖고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

(현대환경연구소, Eco-Brief, 2000년 8월 1일)

5. UN Global Compact 고위급 회담 개최

- 지난 7. 26일 UN 사무총장 주도로 50여 다국적 기업 대표, 6개 국제 기업연합, 2개 국제노동단체, 7개 국제 시민환경단체 참여한 Global Compact 회의 개최
- 인권, 노동, 환경으로 이루어진 9개 조항의 국제규약 적용방안 집중 논의
 -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 - 원칙 1 : 국제 인권 보호 노력 동참
 - 원칙 2 : 기업의 인권 학대 행위 근절
 - 원칙 3 :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
 - 원칙 4 : 모든 유형의 강제 노동 철폐
 - 원칙 5 : 아동 노동 근절
 - 원칙 6 : 고용과 직위부여에 있어서의 차별 철폐
 - 원칙 7 : 환경오염 예방 접근법 강구
 - 원칙 8 : 환경 책임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실천
 - 원칙 9 :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 권장
 - 참여 기업대표들은 동 규약을 기업 경영방침에 명시할 것을 합의하였으며, 국제상공회의소 및 WBCSD(World Busines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)는 환경 및 사회적 조항을 포함하는 포괄적 지속가능성 선언을 2002년 Rio+10 정상 회담 이전까지 준비키로 합의

(요약번역 : www.unglobalcompact.org)